

의안번호	제 50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성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7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 의 자 : 박성원 의원
찬 성 자 :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심기보, 이수완, 임동현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예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라.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마.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안 제6조)
- 바. 운영 및 지원(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아.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69호

(2020. 8. 20. ~ 2020. 8. 24.)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지원 예산 확보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과 제5조의 사업에 따라 지역 향토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 추진 계획과 제5조의 사업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역사·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방자치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6호, 2019. 12. 3,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육국 학교혁신과장 김동영